

<b>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b>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판매업 주소		
판매업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 S No.)	
	용도	
	취급시설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	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관·저장	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